

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기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23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2647)
2.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1491)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234)
4.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810)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112934)
6.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103873)
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8.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104509)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1)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4)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79)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64)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8)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67)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6)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27)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8)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6)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5)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9)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66)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6)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4)
2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1)
2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29)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52)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12)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76)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80)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47)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1)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01)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19)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62)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36)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3)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12)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9)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2)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58)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99)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4)

상정된 안건

1.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 3
2.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환 의원 등 67인 발의)(의안번호 2111491) 3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 3
4.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 3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 ... 3
6.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3
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3
8.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3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1) ... 3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4) ... 3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9) ... 3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 ... 3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8) 3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7) 3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6) 3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7) 3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 3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6) 3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5)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 3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6) 4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4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4
2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 4
2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9) 4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4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4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4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4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4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4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4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4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4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4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4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4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4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4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	4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	4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	4

(14시15분 개의)

○소위원장 강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송영길 의원 등 169인 발의)(의안번호 2112647)
2.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환 의원 등 67인 발의)(의안번호 2111491)
3.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4)
4.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0)
5.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4)
6.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7.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8.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1)
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4)
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9)
1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64)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8)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67)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6)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27)
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8)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6)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5)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9)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6)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6)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24.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1)
2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9)
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52)
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12)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76)
2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0)
3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7)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1)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01)
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19)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62)
3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36)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3)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12)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9)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2)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8)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9)
4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4)

(14시16분)

○소위원장 강훈식 의사일정 제1항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부터 제42항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및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 1쪽입니다.

2건의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 국회의 적극적 지지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지자체·국민 모두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30년 등록박람회의 부산 유치 추진 중입니다. 2건의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동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따라서 두 결의안의 취지를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정부 측 입장은 동의입니다.

동 결의안에 따라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및 국내외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결의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소병

철 의원 대표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상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사항 위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안 발의 배경 및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분쟁이 무역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최근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등 4대 핵심품목 관련해서 첨단분야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 제고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부재가 있어서 관련 산업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송영길 의원안과 유의동 의원안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명과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제명과 목적에서 그리고 주요 용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안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목적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핵심전략 분야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법 제명으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고, 목적으로 국가첨단산업의 기반 조성 및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안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고, 목적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명에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모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 논의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의 규정 관련해서 소병철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국가핵심전략산업/기술’이라는 표현을, 유의동 의원안은 ‘국가첨단산업/기술’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산업 또는 기술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병철 의원안은 산업 또는 대상 기술을 의약품·생명공학 등 법에서 직접 열거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송영길 의원안은 둘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 간의 상호 이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 협력 모델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별도 법을 제정해서 특정 산업 기술을 직접 지원할 경우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얘기도 있어서 기술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위원회에서 지정하도록 한 유의동·송영길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신설 용어인 ‘국가핵심전략산업/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에 따른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핵심전략기술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혼동스러운 면이 있어 보이는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8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핵심기술

은 상용화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안에 따른 ‘국가핵심전략기술’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연구개발 위주의 사업에 국한된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일부 중복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상 범위 및 요건이 상이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의원안 제2조 4호에 보면 ‘연대협력모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대협력 모델은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둘 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가 상호 이익 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35쪽입니다.

3건의 법률안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다른 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법에서 완화된 또는 기업에 유리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등입니다.

우선 3건 제정안은 국가핵심전략 또는 국가첨단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안은 국가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수립 주기는 명시하지 않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시행계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실행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38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입니다.

다른 법률을 통상적으로 보면 중장기 계획들이 5년 단위로 수립 주기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9쪽 아래쪽에 보시면 특허청은 송영길 의원안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에 대한 분석을 명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기술·인력 및 산업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안은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있고, 유의동 의원안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통계 작성을, 송영길 의원안은 현황 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과 통계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의동 의원안과 같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별법에 규정을 하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조직 구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대체토론 부분에 소병철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핵심전략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산학연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핵심전략기술조정위원회를 두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 산하에 핵심전략기술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산학연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원활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층 심의 구조는 수소경제법상의 입법례하고 비슷한데요. 다만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

에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불안정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 및 산업 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층적인 심의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천재지변,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WTO와 GATT 규정 관련된 걸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66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과 관련해서 습득 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적절한 벌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송영길 의원안 10조 제4항의 경우에 국가·경제 안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안정화 조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병철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관련 기술 선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안은 핵심경쟁기술의 선정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송영길 의원안은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절차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병철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전략산업경쟁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송영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73쪽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안과 같이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서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보고드린 대로 전략기술 지정 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에 보면 기술 지정 요건 중 ‘성장 잠재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해당 기술의 연구·특허·표준화 동향 등 성장 잠재력’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병철 의원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및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송영길 의원안은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전략기술의 보호 조치 및 유출·침해 행위 금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9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송영길 의원안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에 기업 간 기술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 규정을 적용하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관련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건 모두 핵심전략산업의 발전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소병철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산업단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병철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유의동 의원안은 ‘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 관련 기업 등이 모여 있는 곳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소위 자료 103쪽에 보시면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이외를 우선 고려하도록 그렇게 법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안 18조 제2항 제4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화단지 육성시책 수립 시 지식재산권의 출원·관리 촉진도 함께 포함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99쪽은 송영길 의원안에 있는 전략산업 특화단지하고 기존의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관련 비교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병철 의원안은 각종 부담금의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인허가 의제 및 특례,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추가로 유의동 의원안은 국·공유 재산의 사용·수익 허

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서 송영길 의원안은 민원의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안 20조 제1항의 경우에 특화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송영길 의원안 20조 제1항 중에 산업기반시설에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중화 시설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 규정이 없어도 산업기반시설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관련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병철 의원안은 병역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송영길 의원안은 연구개발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기업에 혁신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조항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 대응 및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50쪽입니다.

3건 모두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병철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참여 등의 우대규정을 두고 있고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관련하여 유의동 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에 송영길 의원안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안 27조 3항의 경우에 긴급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도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66쪽입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건 모두 관계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의 신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안은 핵심전략산업 기업 등과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규제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이 첨단산업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완화 또는 특례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이 이런 활동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등의 절차에 따라 규제특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절차가 좀 복잡해서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각 의원안별 규제 개선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실어 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제협력, 투자 활성화 및 기타 특례조항 관련입니다.

3건 모두 국제협력 및 교류의 추진 근거와 세제 지원 등 투자 활성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병철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라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특례를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안은 화학물질 확인·등록

지원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고요. 송영길 의원안은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소병철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 추진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3건 모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소병철 의원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총량규제 적용 특례를 두고 있고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특성화대학의 지정 근거, 전문교육을 위한 종합교육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관련 산업의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연구개발 등의 지원 근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분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보칙입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특화단지 관리기관 및 전략산업 등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술의 수출증지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22쪽입니다.

3건의 제정안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과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허가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벌칙입니다.

유의동 의원안과 송영길 의원안은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한 반면에 소병철 의원안은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양벌 규정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유의동 의원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에 송영길 의원안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규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의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벌칙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편 송영길 의원안은 10조 제5항에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관련 습득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 시 이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벌칙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제정안은 시행일을 모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을 하고 있고 유의동 의원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의동 의원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산업기술혁신계정’을 ‘산업기술혁신계정 및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42년 12월 31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송영길 의원안의 경우에는 특화단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설치가 진행 중인 산업기반시설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법이고 또 특별히 처음 논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 취지와 목적과 그다음에 핵심 내용과 쟁점들을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조문별로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해서 핵심 산업 공급망 전쟁이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달에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 7월 달에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핵심 전략산업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국가와 경제안보 자체가 앞으로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핵심 산업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육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항 및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특별법 발의안 중에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지원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하고 산업과

급효과가 큰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지정하여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한다든지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R&D 예산 편성 시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R&D 지원을 위한 예타 관련 사항들과 정책 지원사항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된 사항과 인력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기술 보호법보다 아주 강화된 수출이나 M&A 승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전략기술 유출 시에는 기존 법보다 아주 상향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기술 보유자를 전문인력으로 지정해서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체계입니다. 추진체계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을 범부처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체계로서 총리 주재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의 특례 관련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청이 함께 고민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 내 부처 간 협의 결과에 있어서 좀 다르게 발의된 조항은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타 관련 사항과 기반시설 지원 관련 사항인데 조문별 의견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항은 지금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전체적인 조망을 해 봤고요.

조문별로 의견을 드리는데 동의사항은 그냥 동의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견 있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조문별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제명 및 목적은 송영길 의원안에 찬성을 합니다.

25쪽, 정의규정 관련해서 수정 동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관련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범위를 제한하지 않

는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대신에, 29쪽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대로 공정위와 협의를 완료해서 연대협력모델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35쪽,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합니다.

38쪽, 전략산업 등 보호 및 육성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39쪽의 특허청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전략산업 등 현황 조사 및 통계의 작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53쪽,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관련 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의 필요성에서 송영길 의원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R&D 관련돼 있어서는 국가 R&D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주재로 기술조정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긴급수급 안정화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하고, 다만 검토의견 하단에 있는 벌칙조항 관련해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칙조항 신설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68쪽,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화에 대한 특허청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 입장에서는 동의 입장입니다.

73쪽, 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79쪽, 전략기술의 보호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약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있는데, 제약·바이오와 같이 후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지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관련해서는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98쪽 특허청 의견에 대해서는 특허청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관련 사항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14쪽,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성장과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147쪽, 기업의 혁신발전 지원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허청 의견을 수용해서 지식재산권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150쪽,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예타 관련 특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신속처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엄격히 관리해야 된다는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6쪽,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179쪽, 국제협력, 투자활성화 및 기타 특례조항 관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병철 의원안의 근로기준법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의동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특례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195쪽, 전문인력의 양성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199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기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발전 고려 시 수도권대학 정원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쪽,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관련해서는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체토론에서 검토의견을 주신 공정위와

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위와 협의를 완료해서 정부 측 수정대안을 드렸습니다.

220쪽, 보칙, 자료제출 및 검사 및 청문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222쪽,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26쪽, 벌칙 관련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긴급수급 안정화조치 경우에도 벌칙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3쪽, 부칙 관련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부터의 발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재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한 3개월 정도 관련 산업계하고 산업협회, 학회 등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반도체특별법, 오늘 송영길 의원안으로 제출된 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산업부장관의 정부 입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부 입장하고 다른 내용이 송영길 의원 대표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인프라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여태껏 대부분의 법을 만드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정부부처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 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은 분명히 하되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가는 행정부에서 정해 달라. 다만 지원을 하라는 것은 입법부에서 확실히 좀 명시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행정부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산업계가 제대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또 이중화를 명시했는데 아무래도 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용수가 이중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손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용수하고 전력, 도로, 폐수 처리 부분에서 100% 미국의 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도 인프라 지원을 100% 주 정부나 정부가 한다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못 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정부가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속행위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타 면제량 관련해서는 현재 예타 면제를 신청하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예타 면제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청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과학기술부의 심사 과정이라든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지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산업자원부의 심사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의 3분의 2의 의결을 거친다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주자 이런 취지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길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 송영길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타

가 지연돼서 정부의 전략산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는 데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부 측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분명히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으로써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국회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여튼 법안 만드신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우선 이 3개의 법안이 방향성은 같은데, 이것을 정부가 사실 필요로 해서 여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든 법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당에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원체 제정법이니까 복잡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해야겠는데 여기서 첨단전략산업의 예를 한번, 어떤 산업, 어떤 분야를 전제로 하고 이 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대표적인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반도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반도체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 이차전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차전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사례를 들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국제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산업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할 선도산업을 아마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반도체·이차전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공급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산업에 있어서, 그런 기술에 있어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까지 같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해를…… 이 법에 대해서 찬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새로이 만드는 법을 갖다가 여기서 후닥닥 하기가 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정부가 우리 소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 놔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 추구, 이 법을 입법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법 목적이? 입법 목적이 우리가 지난번 소부장 관련 법은 우리가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산업이 사실 경쟁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끌고 가는 이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이 법은 우리가 이미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기술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육성·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개념이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원해서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핵심전략산업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원·육성하는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와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두고 전략무기화 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이게 단순히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 경제적인 측면까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현재의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육성을 해도 우리가 가지

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유출됐을 때 또는 경쟁국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보호 측면도 같이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나 배터리, 이차전지 같은 산업들이 사실 정부가, 산업부가 육성·지원한 것도 있지만 사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말이지요. 어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규제를 미쳐 관료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산업이 오히려 육성되고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금 용인에 SK가 반도체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용인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것 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겨우 자리 하나 터 잡았어요. 잡았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원칙적으로 이 법의 입법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동의하는데 이 법이 오히려 이 산업 자체를, 산업생태계의 발목을 잡거나 나중에…… 여기 보면 나중에 정보를 제공받게끔 의무화하는 규정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 가지고 산업생태계에 오히려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산업경쟁이 오히려 뒤쳐질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육성이냐, 육성·지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법인지 아니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기본적으로 육성이 핵심이고요. 육성의 한 가지 방안으로 일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예가 용인 같은 경우도 각종 규제에 인해서……

○**이철규 위원** 그렇지요. 규제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게 규제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게 현실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산업인데 여기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하는 것 가지고 이 산업을 누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사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안정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면 자본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자본 투자인데 이게 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산업이 유지되고 지원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여기에 무슨 지원을 의무화하고 뭐하는데, 지금 반도체나 또 이차전지 산업을 기업들이 정부에도 돈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보다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 절차를 간소화시켜 달라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법의 핵심 중의 핵심의 하나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정부 규제보다는 지역·지방에서 건설한다든가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가 가장 큼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관해서도 의제 처리한다든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의, 이 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저는 지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인데 지원이라는 게 현금 지원 또는 직접 생산 요소에 투입되는 어떤 부지의 지원 이런 것보다는 사회간접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가 또는 전력망 공급이라든가 도로, 이런 정도의 지원에 그쳐야지 이걸 직접 지원해 가지고, 아까 여기도 우려가 좀 나와 있대요. 이게 뭔가 하면 WTO의 보조금 규제에 걸릴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꼭 지원을 의무화하거나 이렇게 자꾸만 돈 쥐 가지고 기업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쟁력이 갖춰지겠습니까, 얼마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냥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서 절차 같은 걸 간소화시킴으로써 기업하기 좋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끝내고.

나는 직접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지원, 도로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통신·상하수도 이런 간접지원과 절차의 대폭 간소화 쪽으로 정리하는 데 대해서 우선 저는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이철규 위원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게 만약에 전제가 충족된다면 신속하게 하는 데 저는 전반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직접지원이 아니고요, 간접지원입니다. 기반 인프라를 지원해 주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의 특례 같

은 경우를 하는 부분하고 자금 융자라든가 많은 투자가 일었을 때 세액공제 같은 형태로 해서 투자에 대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지원은 거의 없고요. 직접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관련처럼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굉장히 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법안이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고 또 제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핵심전략기술이 해외로 방출되는 걸 막겠다, 이거를 반대하는 여야 위원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논쟁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핵심전략기술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기술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걸에 첫째, 핵심 국가기술을 결정하는 데 과연 국가가 과연 최고의 지력과 예지력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옛날에 반도체가 이렇게 뜯지 솔직히 몰랐잖아요. 이차전지가 이렇게 뜯지 전부 몰랐지요. 기업이 투자한 거지. 국가가 과연 이럴 능력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 저는 지원하는 거, 간접 지원하는 거, 우리 변재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도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산업 기반 전력·용수들 다 지원하자,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하는 거 이게 직접지원이 아니고 뭘니까. 세금 낼 걸 면제해 주는 게 직접지원이지, 간접지원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명백하게 세제 지원이 있고 이거는 대기업도 해당되지요, 지금 법안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조정훈 위원 송영길 의원 얘기하시니까 송영길 의원안에 의하면 대기업도 세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과연 대기업이 지금 돈이 없을까요?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저기

방금 전에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정훈 위원** 변재일 의원님은 여기 계시지만 변재일 의원님을 논의하실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아니,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삼성이 예를 들면……

○**조정훈 위원** 삼성이 솔직히 미국에 간 게 압력 때문이지 조건이 좋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정훈 위원** 해 주는데 조건까지도 좋은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속하게 지금 1년 내지 6개월이 아주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기간을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투자가 안 됐을 때 저희가 그거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정훈 위원** 차관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신속처리 너무 좋고요. 다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두 가지 중에 기술 유출 방지에 동의하고요. 육성에 동의하는데, 간접지원도 동의하고요. 인허가 의제 신속처리 다 동의합니다. 다만 직접지원, 특히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담금을 감면하는 이 문제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삼성이, 하이닉스가, LG화학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상황입니까? 세제 지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이 사항들은 아마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할 때 또 그리고 이게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10년 또는 20년까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일종의 유도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조정훈 위원** 아니, 대기업한테, 저도 대기업 많이 만나는데요. 세금 안 내서, 세금 높아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세금 다 낼 수 있는데 제발 규제 좀 풀어 주고 규제 좀…… 빨리 인허가 해 주고 하나 더 요구하면 산업 기반시설 좀 해 주면 좋겠다 이걸데,

그거 다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차관님 얘기는 계속 제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딴 데로 가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 기업이, 대기업이 이걸 결정하는데 정말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확신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대기업한테 지금 핵심은 규제완화가 핵심이 지원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 혜택을 대부분 보는 것은 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산업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조정훈 위원** 그렇다면 차관님, 세제 지원을 하되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서 지원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99페이지 전문위원들이 잘 요약해 놓은 거 보면 특례를 보면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부담금 감면은 ‘중소·중견 기업 한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부담금 감면까지도 지지합니다. 세제 지원을 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런데 지금도 핵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이 나가는 하는데 이게 추가로 조금 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로 또 하겠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까지도 50% 이상씩 면제를 하면서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조정훈 위원** 그거야 해외기업 유치고요. 해외기업 유치고 우리는 국내기업이잖아요, 지금. 해외기업도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건 해외기업은 한정해서 주시든지.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세제까지 지원해 주면 그럼 도대체 누가 세금 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분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세제를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지금 반도체가 우리 국내 경제라든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관련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지원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른 위원님들……

양금희 위원님.

○양금희 위원 지금 이제 법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유의동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이 저희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저희들도 3개월에 걸쳐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곳에서 간사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을 만들 때 글로벌 공급망과 그리고 국가 첨단산업 부분에 대한 기술 보호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을 가진 반도체나 이차전지, 배터리 분야 이런 분야의 기업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유치해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사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에 자꾸 좋은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 자체를……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해외 여러 거점에다가 그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러한 산업이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해외하고의 경쟁력을 위한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있는데 세제 지원보다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거의 대부분 차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인프라에 대한 지원, 규제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던, 간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소 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신속하게 좀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선 의결할……

그럼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조항별로? 자구별로 보면 되나요? 양이 많아서……

○이철규 위원 이걸……

○소위원장 강훈식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제정법인데 일단 공청회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마 이 법 제정의 시급성이 지금 아마 그쪽에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부처에 또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담아서, 우리가 일하는데 무슨 시간의 제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라도 이거 원포인트라도 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이지요. 조문화 작업을 좀 해서 다음, 다른 거 아니고 딱 한 번 우리가 한 30분이라도 소집해 가지고 그냥 바로 의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늘 다른 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금희 위원도 이걸 논의를 계속해 왔으니까 조정훈 위원님이나 몇 분이 좀 모여서 가지고, 대개 오늘 원론에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원론에는 거의 공감할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 자구라든가 몇 가지만 조정을 해 가지고 단일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시간 정해서 다음 주에…… 이거 30분이면 되잖아요? 30분이나 한 시간이면, 원포인트로 의결하기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양금희 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부 법안인 송영길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보면 규제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규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이런 법들에 대한 건 조금 덜어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는데요.

○소위원장 강훈식 일단 지금 여기 와 계신 부처가 어디어디 와 있지요?

아까 저한테 주신 게 기재부……

○이철규 위원 기재부 와 있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기재부·과기부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철규 위원 특허청도 와 있고요?

○소위원장 강훈식 예?

○이철규 위원 특허청도 와 있나요?

○소위원장 강훈식 특허청은 안 와 있습니다. 기재부랑 과기부 와 계시지요?

기재부 의견, 과기부 의견 듣고요.

위원님들, 오늘 일단 먼저 공청회 생략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기재부하고 과기부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조정을 하고 원포인트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철규 위원 지금 여기서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이 법이……

○양금희 위원 예, 엄청 많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 법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법을 몇 시간 만에 똑딱할 수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강훈식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재부·과기부 의견을 간단하게, 이 법안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공청회 생략의 건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의견을 들은 것을 저희가 종합하는 것으로 해서 원포인트로 다음 주 시급한 시일 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국장님 나와 계신 거지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이 대참했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기재위 회의가 있어서?

그러면 나오셔서 이 법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증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먼저 저희 기재부에서는 산업부를 통해서 이 법 대상선정의 의무화나 신속처리 의무화 그다음에 예타 면제, 세 가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 모두 반대의견을 분

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예타 제도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지침 그리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예타 체계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선정부터 그다음에 예타 조사기간 그다음에 예타 면제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특별법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타 특례 규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전체 예타 체계를 흔드는 사항으로 저희 부 입장에서는 수용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특히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 요건에 국가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요건을 인정 받은 경우 별도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 의견 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예.

○이철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소위원장 강훈식 두 가지 더, 시설 이중화에 따른 지원 의무조항하고……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제가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소위원장 강훈식 소관은…… 기재부는 혼자 오신 거예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예, 타당성심사·예타 관련해서 제가 왔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재부 입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 입장에다가 시설 이중화에 대한 지원 의무조항도 있고 또 현재 건설 중인 단지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님 나와 계신 거지요?

과기부 입장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저희 부는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항 같은 경우는 송영길 의원안이 정부와 조율된 안인데,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다

만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기재부랑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감사합니다.

부처는 두 군데서 오신 거지요? 말씀 다 하신 거고.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청회·청문회 생략을 의결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 주신 위원님들과 부처가 자구 수정이나 문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일주일 정도 전후로 저희가 원포인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안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58조 6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1쪽입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다섯 번의 소위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요지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관련 법이 하나 의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요지 중에 9월 8일 자에 산업데이터 정의 규정 및 이해관계자 간 계약 체결 관련 규정은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이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동 법안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권리 보장 문제는 동 법안과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8일 자 논의 요지고요. 그 사이에 관련 법이 하나 제정이 되면서 이 법에도 내용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3쪽의 자료를 먼저 보시면, 고민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과기위원회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내용도 같이 포함하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 법안은 지금까지 총 5회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이 심사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되게 고생들을 많이 있고 산업에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고 법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간 다섯 차례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가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류호정 위원님께서 그동안 데이터 기본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기본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서 10월 10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표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자구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4조 2항에 저희가 정부 수정의견을 통해서 보완됐다고 봅니다.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5차 소위에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해서 이익 분배 근거 조항을 추가하거나 또는 타 법에 이 사항이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산업데이터에도 적용되도록 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논의했지만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개인 이익 분배 문제는 좀 더 큰 틀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저희 산업디지털 촉진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타 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정이 됐을 경우 동법하고 배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법률 검토 결과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법이나 데이터기본법 같은 좀 더 상위법에서 별도로 다루어서 반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제도가 도입 전이라도 또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저희가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이런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담아서 제공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 법이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산업계에서는 조속한 법 통과를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 꼭 좀 법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상 정부 측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중요한 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허용해 주신 강훈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악한 심정으로 이 법을 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드는 질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관계부처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안과 답변을 준비해 오고 계시는데 어찌면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아주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법에서 소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과 IT기업 간의 데이터 거래를 모범으로서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그렇다면 이 윗단에서의 거래를 허용하면 1차 데이터 생산자인 개인에 대한 적절한 권리와 보상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제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세 가지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

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정의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법안에 해당되는 산업의 종류를 차관님이나 관계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기계 데이터, 기술 데이터에만 국한하자. 그러면 개인정보 문제가 사라지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법에 담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1차 생산자와 데이터를 모으는 업체와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했을 때 많이 반영해주셔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하셨다고 들었고, 그 결과물이 12월 초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왜 제가 제안한 것들이 수용 불가능한지 그 자료를 한 페이지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 산업데이터 정의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삭제하면 개인과 사용·수익에 대한 별도 계약이 필요해서 수집 및 활동비용이 증가된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이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이미 심각한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위험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와 와서 보고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은 기술데이터지 서비스데이터가 아니더라고 하셨는데 서비스데이터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융데이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 조정식 의원안 2조 1호,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이라고 돼 있고요. 제가 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산업의 명단을 구해봤습니다. 구해 봤더니 이런 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의원·기타 보건업, 즉 병원과 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데이터는 이 법에 의하면 거래됩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이건 명백한 금융데이터입니다.

이런 모든 산업들이 산업데이터,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산업데이터만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면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령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이 법은 솔직히 말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정보까지 산업데이터가 되어서 지금 거래되는 상황에 1차 생산자가 그 어떤 권리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저는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 논리를 더 오래 끌 생각은 없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이해관계자와 범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 동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타부타 길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깐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급한지 여쭙았는데 이미 예산 반영도 끝났고, 통과는 안 됐지만 22년 정기국회 예산 끝났는데 소위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시급성도 없고,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못 하는 특정한 무언가 이해관계도 지금 없고…… 모범이기 때문에, 이게 촉진법이거든요. 물론 이게 통과되면 촉진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특정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합리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 여기서 30분, 1시간 논쟁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말도 좋습니다.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법 중에서, 일정 다 조정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열분 가까이 모이신 것 같고 부처에서도 세종시에서 올라오셔서 법안소위를 열고 있는데, 지금 소위 안건 중에서 오늘 논의 안 하면 당장 사람이

죽는 법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법안 논의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법이 안 되면 누가 죽고 사냐 이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시장과 경제 분야에서 요구되는 계약의 근거나 법적 권리의 근거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서는 이게 시급하지 않은데 왜 오늘 꼭 통과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지금까지 몇 번을 논의했다고…… 다섯 번인가요, 여섯 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참여해서 이 법에 대해서 토론한 것만 지금 몇 시간이 되거든요,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많은 논의를 했고. 물론 법안소위 위원이 바뀌면서 또 새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법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하자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 법이 사회적으로 또 시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적정한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하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토론을 투입한 동료 위원들에 대한 적절한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위원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제 말 안 끝났고요.

지금 문제의식은 어떤 문제의식인지 저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얘기를 하시는데 산업데이터…… 산업적으로 모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급 단위의 거래도 지금 거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초등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듯이,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노인 복지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얘기가 안 되듯이 지금 사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내 제도가 미비한 점이 많고 굉장히 초기적인 법제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과 산업,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의 근거도 사실 불명확한 상태고요. 기업하고 개인하고의 관계, 지금 위원님께

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법률적인 제도적인 공백 상태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한 큐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절반을 먼저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그것 급한 것 아니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하자라고 하면 저는 국회의 책임을 좀 방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데이터 생성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진 않았지만 그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개인들에 이익분배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청구권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미비한 제도 중에서 하나의 덩어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본법 또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수준까지 개인에 대한 데이터 권리,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이익배분권,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지 사실은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수 있고, 저는 가이드라인 이전에 용역이나 토론이나 각종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게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하지 말자? 기업 간에 거래의 근거나 권리의 근거도 우리가 만들지 말자?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어렵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다른 법과 관련해서는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류호정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과 법안소위에서 여러 문제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의도 이렇게 10명 이상이 시간을 내서 모였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공전해도 된다고 계속하는 것은 이 법안소위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과 시간을 조정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이렇게 참석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거면 무슨 법안을 오늘 통과시키겠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없는 데요.

그래서 이미 이게 한두 번 토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원칙 규정이라도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라

고 하면 그거라도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게 맞고 계속 다음번, 다음번, 지난번에도 다음번 얘기했었고요. 그 전에 법안소위에도 다음번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같은 얘기로 계속 토론을 해야 됩니까.

○조정훈 위원 제가 좀……

저는 이소영 위원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고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넘기자는 것 아니고요. 이 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논쟁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의 10배, 100배도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해소해서 넘어가자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정부가 그 세 가지를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적용되는 것이 병원, 의원, 기타 보건업이 다 포함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소유권이 그리고 그 가치가 개인에게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정보의 소유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정보를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적정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저희가 상의했고요. 그 법안과 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용·수익권에 대한 내용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개인정보위원회는 그걸 논의할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이소영 위원 물론이지요.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 복지하고 노인 복지 하자, 뭐 고등교육·중등교육, 전혀 관련이 없는 비유고요. 그 비유하고 제가 말씀드린 논의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정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모법이 없어도 데이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에서 이미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것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고 민감한 것들을 일단은 빼고 정말 90%라고 산업부 실장이 얘기한 그 부분만 일단은 넘어가자, 그것 하는 방법으로 제가 두세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이해관계자에서 조정을 하든지 관련된 산업에서, 의료산업, 병원·의료원 같은 것들을 빼자.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병원·의료 데이터 다 여기 포함시켜야 되겠다, 금융 중심 데이터 다 포함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 아니고요. 대안을 지금 3개나 제시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대안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부처에서 만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시간 끌기, 질질 끌기라고 보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해도가 한 99%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고, 다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뭔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 담자는 취지이고요.

이미 데이터 거래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당장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연장하자는 것 그런 정도 아니지요. 저 그것 이상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갖고 올 수 있는 독소·부작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응하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토론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정훈 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런 토론, 똑같은 이야기를 3회 정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오시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지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산자부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법안 통과시키고 싶으면 빨리 가이드라인 좀 주시고 상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이드라인이 답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논의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이원욱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 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요 내용만 빠르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에 청정수소를 정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청정수소 발전에 대해서도 각각 정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에는 청정수소발전 외에 수소발전을 추가로 정의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2쪽에는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 요청 대상을 산업단지와 대형건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청정수소를 생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조건부 인증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량과 구매자에 관해서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청정수소 인증 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정수소 판매 및 사용 의무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청정수소발전 구매 또는 공급 의무화 제도(CHPS)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자 및 구매의무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인증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청정수소 인증 무단 사용자 등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는 이원욱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송갑석·정태호 의원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같은 경우는 24년경에,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는 그 이후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포 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관련 개정 조문들이 어떤 내용은 청정수소도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은 청정수소 아닌 것도 같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차구 정리는 저희 실무진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2항입니다.

182쪽입니다. 이것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소위에 첫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소산업 등의 용어 정의에 수소가스 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소발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수소가스터빈의 조기

상용화 추진을 정책 제언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이행의 주요 수단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같은 이원욱 의원안에서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별도의 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별도의 요금 체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쪽입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수소 기반 발전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분야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용도별로 구분을 하면 혼소터빈 등 수소발전의 직접적인 연료로 사용되는 것하고 수소발전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개질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제 대상에 수소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용 및 개질용 천연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질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별도 요금 체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조문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약간 빨리 읽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분하게 조문별로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그러면 89쪽의 정의 규정에서, 청정수소 개념에서 ‘현저히’라는 용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이소영 위원 마이크 가까이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청정수소의 개념 정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청정수소 발전의 정의가 필요한데 발전을 전기 생산 또는 전기와 열 생산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 96쪽입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제시를 해 주셔서 다른 에너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국제적으로나 국내 민간 기업 측면에서나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한을 플렉서블(flexible)하게 명시할 안 하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이라는 사항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서 탄소중립의 입법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연료전지 설치를 산업단지와 대형 건물에 의무화하는 정태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발전을 지원·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의무화를 통해서 연료전지의 실제 이용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지원 제도가 또 도입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수소법에 규정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분산에너지 확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거기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REC 가중치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CHPS 제도 도입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RPS 제도와 완전히 다른 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REC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정태호 의원안 제26조의6과도 충돌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공급인증서 가중치 두는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의 대상은 수소의 생산시설 등보다는 수소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

고 있고요.

판매증명서 발급 의무를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산·수입·판매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생산·수입·판매자가 생산·수입·판매량을 별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은 판매증명서 발급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한 조항이고요.

다음, 126쪽입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에 대해서는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무 대상자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청정수소발전 구매 의무화 제도(CHPS)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무 구매 대상을 발전사업자로 규정한 의원님 안이 있고 판매사업자로 규정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포괄하는 전기사업자로 통합해서 CHPS 제도의 경쟁성 도입과 신기술 도입의 특수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적인 탄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 대상자는 양 사업자를 포괄하는 전기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과징금은 필요한데 국제기본법 준용 규정은 이율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원 대상이 불명확한 징수 비용 지원 근거 등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71쪽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및 벌칙인데요. 제1·2·3호는 취지에 동의하고요. 제4호의 인증 기준 미부합 시 점검 과정의 인증 취소가 가능하므로 변경 인증 의무화는 불필요하고 그래서 벌칙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5호·6호 등도 벌칙이 불필요하고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조항인데요. 과태료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청정수소에 관한 인증 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도 동의를 합니다.

180페이지, 시행일입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렸드시피 저희가 CHPS 제도는 23년경에 도입·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청정수소 인증 제도의 경우에는 25년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해외 수소를 어느 시기에 도입할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여건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에 시행 시기를 확정해서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의 탄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포 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님이 제안한 수소가스터빈 등에 대한 수소발전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연료전지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이 각 전원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요금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별도 요금의 경우에는 개질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별도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의 질의 순서인데요.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질의할까 하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 12분 후에 계속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강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 전까지 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21조 관련인데요. 자료에서는 10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하고 건물, 대형건물일 텐데 여기에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설치하라고 하는 권고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동의하는 정부 의견의 근거가 산단 내에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청정수소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료전지를 산업단지에 설치하면 스마트그린 산단이 됩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일부 기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 그린 산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는 있고 없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위원들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확보하는 산단이 RE100 산단이 될 수 있습니까?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료전지가 있나요, 국내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현재는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당분간도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나중에 청정수소 공급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소영 위원 기약이 없잖아요. 지금 몇 년부터인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현재 정확한 시점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RE100 산단을 촉진하자고 그린 산단 관련된 법안도 만들고 통과도 시키고 RE100 산단에 입주하게 하려고 막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산단에 연료전지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거랑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연료전지가 설치되는 순간 RE100 산단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하고 이게 엮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분산전원으로서 산단 내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의를 두신 것 같은데, 사실은 분산형 에너지가 연료전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사실상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 같은 권고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의 그레이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은 특혜…… 이걸 대신 판매해 주는 판매 활로를 확보해 주는 이런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법률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21조는 통째로 저는 들어내는 것이 맞고 만약에 분산전원으로서 어떤 유도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분산전원 특별법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앞서 정부 측 의견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원칙적으로 어떤 분산형 전원 축진을 위한 의미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규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럼 21조를 이 법안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도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혹시 이제 이게 분산전원의 의미가 있고, 현재 공공건물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건물에 설치를 좀 권고를 하는 규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설치계획서 제출…… 그러니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특정 유형의 전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권고하는 것인데 많은 전원 중에서 특정 유형을 그렇게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려면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답변하셨듯이 이거는 탄소 중립이나 그런 산단하고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분산전원은 연료전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전원이 연료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전지 설치를 압박하는 내용의 권고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1조 자체가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상.

○소위원장 강훈식 차관님, 답변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예, 좋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이원영 위원 저는 이제 수소경제에 대한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는 2차 에너지잖아요. 그렇지요? 수소가 대기 중이나 지구상에 따로 되어 있지 않으니깐. 수소를 분리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에 따라서 청정 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클린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의 정의 자체에서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한다고 하고 그걸 시행령에 위임하신다고 하는 건 2차 에너지로서의 수소의 청정성을 저는 좀 많이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린수소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린수소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 연료전지에 대한 조항, 방금 삭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수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수소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게 맞겠지요. 수소에 대해서 여기 발전하는 경우하고 산업 쪽에 쓰는 경우도 있나요, 법안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이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 양병내 수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 쪽에 수소를 사용·판매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산업 쪽에서 수소 판매를 의무화하는 거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 양병내 현재 개정안에 보시면……

○양이원영 위원 몇 조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지요? 그러니까 수소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 양병내 25조에……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수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청정수소를 의무화하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관 양병내 수소연료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산업체가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법에

제가 세부항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그린수소가 없는 상황이고 쓰는 거는 대부분 그레이수소 아니면 부생수소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레이수소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하면 할수록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는 마찬가지로 나오는,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마찬가지로 나온다는 얘기는 단위 kWh당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지요, 가스발전보다. 가스발전을 그냥 전기로 하거나 가스발전을 열병합으로 하거나 가스로 바로 하는 것보다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 수소로 전기를 하거나 수소로 열병합을 하면 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데 에너지가 들었기 때문에 단위 kWh당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그 부분은 과거에 제작되었던 수소연료전지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는 LNG 발전보다 탄소 배출이 더 적은 걸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에너지차관님, 그래서 제가 산업부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수소국에서 그 주장을, 제가 국정감사 때 연료전지에서 온실가스가 가스보다 일점몇 배 더 나온다는 걸 가지고 수소국이 반박 자료 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양의원영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공식 온실가스 인벤토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답을 받았습시다. 특정 업체가 홍보하기 위해서 자사의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것을 중앙정부가 해명자료, 그것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 자료로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걸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가스를 그냥 사용할 때하고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 발전하고 열도 쓰는 거는 당연히 한 단계가 더 들어가니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따라서 단위 에너지당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수소는 제철, 제강이라든가 정말 수소가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는 환원제철 공정이나 이런 데에다 우선적으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청정수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다고 얘기를 한 다거나 아니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한 60% 이상이었나요? 거의 고철 덩어리로 버려지고 있는, 사용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데에 쓰인다거나 그리고 경직성 전원으로 원전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연료전지도 스택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데, 그런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청정수소라고 정의하고 이런 전반적인 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정의에서 시행령에 위임시키면 안 되고 수소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안 나온다고 또 다 깨끗한 건 또 아니잖아요. 핑크수소인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핑크수소 아세요, 뭔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못 들어왔는 데요.

○양의원영 위원 원전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경우에는,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그건 깨끗한 수소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그 부분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여기에 써 있잖아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만 현저히 적게 나오면, 안 나오거나, 그걸 청정수소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로 포집하면은 그건 청정수소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위원님, 제가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중간 단계로 LNG 발전으로 전환해서, 50년까지 LNG 발전도 대부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암모니아 가스 혼소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LNG 발전 시스템하에서 수소 혼소, 터빈에 의한 발전 등의 기술과 수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수소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이행 과정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필요로 하는 기술과 발전원 등이 사장이 되고 활용이 안 되면 저희가 중간에 탄소중립 이행을 스무스(smooth)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린수소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린수소 생산은 실제로 3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린수소가 의미가 있고 생산·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미리 지금 그린수소만을 상정을 해서 이 법안에 관련한 정의 규정이라든지 수단 규정들을 도입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시기를 뛰어넘어서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소경제를 초반 도입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포함한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의 그린 수단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EU의 경우에도 클린수소를 블루수소를 포함한, 그린수소만이 아닌 CCU 캡처를 통한 블루수소도 포함해서 클린수소를 정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양의원영 위원님, 일단 논의가 법 조문이나 이런 거 이전 단계의 논의가 많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제안드릴게요.

양의원영 위원님한테 에너지 차관께서 가서 보고를 좀 하시고 이런 전반의 논의를 좀 하세요. 이런 정도 논의로 우리가 법조문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법안 심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블루수소·그린수소·핑크수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원영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양의원영 위원님은 차관께서 상세한 보고와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조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 거지요? 진짜 의견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권명호 위원님.

○권명호 위원 지금 보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다른 법안과는 달리 정부 수정의견들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발의한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정부 수정의견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더 다듬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많이 안 내시니까 수정안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법안을 다룰 때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또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라 저도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수소 발전 확산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수소구매 의무화제도도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만 대상이 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국내의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수소를 대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장 그리고 당분간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답변도 대단히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소경제에 대한 논란의 문제를 정부가 장기적인 과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인정하고 또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소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가치를 우리가 국민적인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인 수소발전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법의 역할이 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함

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법 제정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겠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법안은 아까 권명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쟁점들을 좀 다듬어서 다시 한번 다음에 논의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차관계서는 이 법안이 되게 큰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되게 의욕을 갖고 있는 법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조금 성의 있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고 쟁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양의원영 위원님이 하신 아주 본론적인 질문에서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차관계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 법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까지 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송갑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송갑석·윤한홍·김정호·최형두·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심사자료 3권, 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관세법 적용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입출항 및 하역절차 등 통관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 규정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송갑석·김정호·최형두·이주환 의원안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호 의원안은 입주 가능 업종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기업을 지식서비스산업과 동일하게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타 수출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송갑석 의원안과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조세 감면 대상을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에서 국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특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송갑석·이주환·김정호·최형두 의원안입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송갑석·이주환 의원안은 공항·항만 물류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김정호 의원안은 국내 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용·생산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최형두 의원안은 국내 복귀기업 및 고용중대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임대료 감면 대상은 박스 하단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추가 감면 시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에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내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에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입주기업체관리번호 발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취급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번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해서 처리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화주가 거절의 의

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 화주의 외국물품이 장기간 적체되는 경우 업체의 원활한 물류 처리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고관리 간소화 규정 마련입니다.

물품의 재고관리체계를 갖추면 물품의 분할·병합 등의 방식으로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만을 재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므로 이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안입니다.

결격사유를 우선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성년 후견인임을 이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개정안은 피성년 후견인임을 이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데, 현재 시행령에서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현저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내용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송갑석·윤한홍 의원안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송갑석 의원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하는 반면에 윤한홍 의원안은 수리기간의 명시와 수리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신고 수리 간주와 관련해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신고는 과세물건의 불법적인 유통, 관세 회피 등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안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요청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관장이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인적사항, 매출액 등을 세무관서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김정호·최형두·이주환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송갑석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임대료,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처리규정, 재고관리 간소화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1쪽의 관세법 적용 근거는 동의합니다.

3쪽의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시행령을 금년도 7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업과 유통기업 수출 비중을 50%에서 30%로 적용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20%로 더해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조세특례법 개정사항 밑의 하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용어 정비기 때문에 동의 입장입니다.

4쪽에 임대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현행은 외투기업만 되고 있는데 관계부처 의견하고 정부 측 의견을 모은 결과 비수도권 유턴기업도 감면하는 것이 정부 측 의견입니다.

다음 15쪽, 입주기업체관리번호 발급 등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해서 16조의2 동의고요.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관한 처리규정 추가, 안 제37조도 동의입니다. 16쪽의 경우에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수정 동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22쪽, 결격사유 및 과태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입니다.

23쪽, 적체기간 위반 행위 관련 사항도 동의 입장입니다.

26쪽, 신고수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보통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관세청의 의견에 의하면 과세 물건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제보다는 검토 적합하면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관련에 대해서는 내용상 동의를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이미 비밀 유지에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입법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5쪽,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들은 규정 내지 또 실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 후 몇 개월 이런 게 아니고 즉시 시행으로 저희 정부 측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철규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기재부가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를 5% 완화할 경우 이런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다 이렇게 약간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이게 타협이 됐나요, 30%로? 임대료를 하는데, 수출 비중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수출 비중을……

○이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하는 물품 중의 절반을 수출해야 되잖아요? 원부자재가 들어와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지금 이제 30%로 완화가 됐고요.

○이철규 위원 물량이 100이 들어오면 50%만큼은 우리 영내에다가 반출할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50% 이상은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입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차관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7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했고 그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50%였는데 대기업·중견기업이 30%만 수출을 해도,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30%?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그리고 중소기업은 20%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그래서 그것은 정부 간에 합의를 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철규 위원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이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입법할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기존에도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것은 필요 없다고 저희 정부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봐요.

자유무역지역은 정부가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까지 다 지어 가지고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주잖아요. 임대료가 거의 없다, 내가 자기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매입을 했을 때 내는 재산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주는데, 거기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이삼십 %만 수출을 하면 나머지는 영내에 반출이 된다, 이것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저희가 정부 내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던 것은 첨단업종 이외의 업종, 기존의 다른 업종들은 50%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첨단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낮췄던 것은, 지금은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30%를 주고 있는데 외투기업에 준해서 첨단업종을 이렇게 낮춘 것은 첨단업종을 좀 더 유치를 하자, 그래서 첨단업종을 수출업종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철규 위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뒷장 4페이지, 지금 기재부가 행안부

하고 임대료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 반대하니깐, 그래서 임대료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80%…… 이게 어떻게 돼요? 몇 %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여러 안들에 대해서는 기재부·행안부가 반대를 하지만 비수도권의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자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몇 %, 어떻게 감면하자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지금 외투기업이 규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전면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일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지대 외에 국내에 대체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이 없다는 가 국내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유무역지대 임대료가 재산세도 안 돼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위원님, 외출법이 외국인 투자기업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다가 비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 걸로 작년 20년 12월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 법은 자유무역지역은 적용이 안 되나요?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나요? 없으면 내버려 뒀도 괜찮잖아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이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특별법이기에 때문에 특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나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이철규 위원 아니, 이 법에 외투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으면 외투기업은 어디에 가서 투자를 하든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그러니까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임대료 감면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유턴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외투 지역이 단지형이 있고 개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형에 대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세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외출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세제 감면이 아니라 여기 임대료 얘기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아, 죄송합니다. 임대료 감면으로 됐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법에서도 개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어요. 이건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다 이거예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소위원장 강훈식 신정훈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26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임대료도 감면해 주고 또 수출 의무량도 대폭 낮춰 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신고수리 관련 개정사항에서 신고수리라고 했는데 신고라는 것은 뭐예요? 접수하면 신고 아닌가요? 이걸 자꾸 말로는…… 이게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래서 저희가……

○이철규 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를 부여하면 관공서에 접수를 시키면 신고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내가 수리했다 하고 통보를 해야 되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신고제 합리화 관리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법체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신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접수를 하는 거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게 있고요.

○이철규 위원 효력이 발생되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두 번째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어떠한 것들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그것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서류가 맞는지 아니면 그 사항이 맞는 사항을 신고를 하

면 그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좋아요. 차관, 이게 행정 편의주의고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신고를 할 때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의무를 부여해서 그러한 조건을 갖춰서 수리한 것은 유효한 신고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이철규 위원 유효한 신고가 되면 수리로 무조건 간주해 가지고 된 걸로 해야지, 다시 별도로 수리가 됐다 하고 허가해 주듯이 하는 것은 수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조건……

○이철규 위원 만약에 조건이 안 된 건, 이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된 게 아니지요. 그건 하자 있는 접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리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리간주제 도입이라는 것은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라든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밖에 더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그래서 어떤 사항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들로, 2개로 나눠서 정부 법체계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주제로 하는 것들은 신고를 한 다음에 정부가 처리를 안 하면, 며칠이 지나면 그냥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되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이철규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 요건을 못 갖췄으면 당신은 이것 수리가 되지 않았다, 이것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리할 수가 없다, 수리가 안 됐다고 반려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없이 시간을 도파시킨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 제도는, 저는 수리간주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위원님, 지금 관세청에서 담당 과장이 나와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철규 위원 어떤 과장 계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관세청보세산업지원과장 이광우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입니다.

관세청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 수입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면 식약처 확인증이라든지 각 관계 부처의 승인증을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승인증이 위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길게 걸려도 통상 하루 안에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규 위원 다 되는데, 그러니까 간주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2주면 2주 이 기간까지 반려하든지, 이것은 서류에 하자가 있다든지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라고 반려해 주든지 그런 조치가……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이, 어떤 처분도 없이 그냥 계속 도파되면 간주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관세청보세산업지원과장 이광우 그런데 저희는 수리를 할 때 그렇게 15일까지 끄는 경우가 없고 통상 하루 안에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을 다 확인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위원님, 관세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좋은데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 특히 이번에 특혜를 줘서 이 지역에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체들에게…… 지금 신고 내용이 물품의 반입이랄지 국외로의 반출 신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신고가 자연적으로 간주가 되어 버리면 만약에 그 내용 중에 밀수품이 있을 수도 있고 탈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세청이 좀 우려하고 있고, 산업부 포함해서 정부 내에서는 관세청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좀 구한 상황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신고로 할 건지 신고수리제 할 건지 각종 법들을 우리 소위

원회에서 많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지침은 뭐냐 하면 사후적으로 그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신고를 했는데 사후적으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제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그걸 감안해서 또 관세청 의견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만 끄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그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신정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신정훈 위원 간단하게……

○소위원장 강훈식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신정훈 위원 설명 과정에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비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거의 비수도권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단지형은 비수도권에 있고요. 공항이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수도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유턴기업에 한정해서 임대료 감면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자유무역지역 수요기업들의 현재 추세가 어떤지 하나…… 그러니까 첨단·신산업·유턴 기업 또 외투기업 이렇게 최근 수요기업들의 상황·동향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외투기업은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비중, 한 3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첨단업종하고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특례를 줘서 입주를 활성화하고 또 그 기업들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지금 이 법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성일 예, 이 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신정훈 위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다 질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최인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18항부터 21항까지는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지방이전 대상 여부 재검토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소위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은 58쪽 상단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균형뉴딜을 법제화하는 사항으로 지난 소위에 주요 내용은 보고드렸고요. 법제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까지만 개진이 되고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도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인데 지난 소위에서 광역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 의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먼저 첫 번째, 혁신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9일, 9월 8일에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쟁점사항은

혁신도시 입지 관련 사항인데요. 당시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개별법인 혁신도시법에 혁신도시 우선 입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능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신설될 때 이러한 문구가 장애가 된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법상 이전 원칙은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것으로 공공기관 신설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원칙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등 과도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혁신도시 입지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 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도시’라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우려사항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뉴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지역균형뉴딜 자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경제나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을 지역 기반에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뉴딜 개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 법제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지를 담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화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광역권 같은 경우도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초광역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초광역권 개념과 계획 수립, 협력사업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균형위를 현 자문위원회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특회계 관련에 대해서는 균특회계 관리·운영 주체를 기존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하고 혁신도시특별회계를 균특회계 내 혁신도시 계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부 회계라든가 기금관리 원칙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서 말씀

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냥 편하게, 지난번에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조정된 것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이 약간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한 건, 한 건씩 하시지요.

○이철규 위원 저는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 안에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에서 비수도권이 차별을 받는다, 경쟁력이 없다 해 가지고 처지고 있는데 기존에 혁신도시법에 의해 가지고 이전 대상기관이 아닌 신설기관 입지를 정할 때까지 지역의 혁신도시 중심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지방에서 다시 또 거점도시 중심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인구소멸지역의 소멸도 가속화될 것이라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쟁을 해도 아마 혁신도시가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수도권이 아닌 도시로, 지방도시로 정의를 해도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라는 걸 삭제하고 수도권이 아닌 그냥 지방도시로 문구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다수의 지방도시들이 또 선거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자체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신정훈 위원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과 여러 차례 개별적인 토론도 했고요. 그런데 우선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개별입지가 아닌 집단입지로, 혁신도시라고 하는 그런 집단 이전을 원칙으로 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주여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려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실 지방의 혁신도시나 대도시 입지하더라도 수도권과의 문화적인 생활 여건의 격차 이런 것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한 50% 내외의 이전률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집단입지의 첫 번째 배경이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치 경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작지 않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결국은 입지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리께서 여러 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정 못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과당경쟁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혁신도시와 일반 지방도시 간에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이철규 위원님의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야기해서 열어 놓고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아마 제한적인 경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00여 개 넘는 지방도시가 다들 개별입지를 지향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두 분 의견이 안 좁혀지시는 거지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원장 강훈식 우리가 이것도 세 번째인데 정리를 하시게요.

○이철규 위원 오늘 한번 결론을 내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그냥 두 분 의견이 안 좁혀지면 안 좁혀지는 대로 더 이상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좁히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를 들면 제철·철강 같으면 광양이나 포항으로 연구소라든가 정부기관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천공단이나 그 가까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입지에 타당할 것이다. 그게 지방도시들이 마구 자기네가 유치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든다면—가칭입니다—가칭 광물자원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 석탄이라든가 석회석 같은. 그러면 결국은 광물자원이나 그런 자원이 많은 곳 거기 인재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혁신도시 등’이 들어가게 되면 혁신도시 위주로, 결국은 석탄공사가 있고 광물자원공사가 있는 원주로 가 버리고 만다 이게 지방도시 내의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지방도시로, 수도권 외의 도시로, 지역으로 해 놓으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우선 경쟁

력이 우위에 있다, 그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몇몇 개의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이전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혁신도시 중심으로 그냥 바로 정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전향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버리시지요. 지방도시가 다 내포하잖아요, 혁신도시를.

○신정훈 위원 그걸 병렬적으로 살려 보면 어떻겠어요?

○이철규 위원 그게 법 조문이라는 게 형식이 때로는 내용을 압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오늘 통과를, 오늘 실적도 안 좋은데 혁신도시를 빼고 그냥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받아들여 주시지요. 통과를 시키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의원님 발의하셨으니까……

○신정훈 위원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가 말하기가 어렵지요. 정부를 얼마나 곤란하게 하십니까?

○신정훈 위원 저는 ‘혁신도시와 기관의 특성을 연계한 지방’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사실은 또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가는 것은 당연히 혁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신설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당연히 나주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지방도시니까요.

○소위원장 강훈식 제가 중재를 좀 한번……

신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냥 이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실익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철규 위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못을 박아 버리니까……

○소위원장 강훈식 왜냐하면 그게 지역의 경쟁력도 이미 혁신도시가 실제로 있는 편일 테고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이 사실은 이게 공회전처럼…… 하지만 신정훈 위원님은 어쨌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구고 그 말을 포기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실제 진행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가기는, 아무래도 혁신도시 우선으로 가는 경향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신정훈 위원 광주·전남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한 중규모

도시들이, 포항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유치 자치 단체 연합, 협의체 이래 가지고 여수, 포항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런……

○이철규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혁신도시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혁신도시를 무제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철규 위원님 말씀이, 실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건 한번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정훈 위원 여하튼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부안에 조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는 걸로, 두 분 의견을 정리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이철규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고맙습니다.

이 법안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법안에 대한……

○신정훈 위원 다만 한 가지만 더 발언……

○소위원장 강훈식 말씀하십시오.

○신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소멸이 굉장히 역주행했습니다. 사실 지금 균형발전 정책, 혁신도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계획이 좀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도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방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또 강원도권, 제주권 이렇게요. 지방 대도시는 좀 덜 그런데 지역 간에 균형발전의 척도가 많이 달라져서 최근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낙후도라는 격차를 반영해서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균형위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좀 고려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신정훈 위원님의 말씀에 저 되게 공감하고, 사실은 이번 정부 와서 서울 집중화가 더 돼서 국토균형발전을 주무로 하시는 산업부가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피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방의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지방의, 여기 오늘 남아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방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파이를 못 키운 것도 사실은 저희를 자책하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것 가지고 지금, 단어 하나 가지고 넣고 빼고 정도로 야박한 정도의 작은 파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산자부가 이런 부분에 신정훈 위원님 말씀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 서울 집중이 아니라 지방 국토균형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다음 법안도 바로 논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77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77페이지, 소위원장 법안입니다.

세 번 올라왔는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 예산에 13조 5000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게 지역균형뉴딜 예산인데요. 이게 입법화를 시키면 향후에 지방에 이만큼의 돈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입법화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입법화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명목을 만들어서 지방에 돈을 보내야 돼서요,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정부 측 의견이나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녁 시간 전에 안건들을 다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크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논의 편하게 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앞서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역균형뉴딜 관련 사업을 취합해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1178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제안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각 부처의 검토를 받아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정부 예산이 13조 10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위원님들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또 입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과 상관없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 오히려 후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투자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강훈식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도…… 다음 번은……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92쪽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92쪽.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초광역권 개념 신설하는 거고 균특회계 소관 이관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만 먼저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광역권 개념과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등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한 가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정부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라는 것이 독립적인 업무를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타 행정기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계속성과 상시성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독자적인 업무보다는 오히려 각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보다는 현재 위원회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이관이 되는 경우는 각 부처하고 업무 조정이라든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위원회가 되면 부처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괄이나 조정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균특회계 관련해서 균특회계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조정한다, 관리·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회계 및 기금은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균특회계와 혁특회계를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계 자체, 각 회계의 목적과 세입·세출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목적상 별도 관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 의견하고 동의하시는 건가요?

○이철규 위원 아니, 지난번에 초광역권 개념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강훈식 아니요, 지난번에 이의가 있었던 것은 개념에 대한 이의보다는……

○이철규 위원 개념에, 정의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 권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한다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조금 반대했던 위원들이 누가 계셨나? 먼 것만에 이것을 반대하신……

○소위원장 강훈식 지난번에 반대했던 분들까지 찾으면 저희가 회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안 계시면 그냥……

○이철규 위원 계정의 주체를 바꾸는 것,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게 많아서 앞에 지금까지 합의된 것으로 정리하고……

○소위원장 강훈식 의결 보류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예, 이것은 보류해서 넘어가게 낫겠어요. 좀 이게 복잡한 게 많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강훈식 다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부연설명 하면 지금 행정부가 행정위

원회를 두자는 것은 거부하는 거고 회계나 이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다 거부하는 건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2개 이상 묶으면 초광역권, 소위 산업이라는 개념은 좀 살려 달라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보류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개념을 살리자 이러면 정부 의견하고 같은 겁니다.

맞지요, 차관님, 제 말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초광역권 개념 또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각종 체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강훈식 나머지는 다 부정하시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소위원장 강훈식 부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좀 덩어리가 크게 묶이는 초광역권의 개념이나 시도들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대구와 경북 이렇게 같이 묶어서 뭘 좀 해 보고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권명호 위원 울산의 경우에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에 논의가 되고 교통, 문화, 여러 가지 산업, 관광 이런 테마로 해서 묶으려고 하는데, 사실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가 돼서 광역시로 나올 때 그 당시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또 초메가시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큰 광역단체의 종속적인 관계로 또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마산·진해가 한곳으로, 행정구역이 하나로 돼 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진해시에서 구로 전략한 상태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들, 문화적인 차이 이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데, 하여간 이게 취지는 좋고 시너지효과가 되면 좋은데 또 폐단이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아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제가 권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부울경이 제일 혜택 보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는 오히려, 호남이나 충청권은 별로 지금 당장 뭐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신중론으로 판단하시면 정부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제일 힘이 많이 될

텐데……

○권명호 위원 울산의 경우가 어떤 분야는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경남에 속해 있을 때 발전 못 한 부분이 광역시가 됨으로써 재정이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뭐……

○양의원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마창진, 마산·창원·진해의 경우는 하나의 지자체로 그냥 묶여 버리니까, 창원시라는 이름으로 되니까 마산이나 이런 데는 이름을 잃어버렸다, 구 차원으로 돼 버린 거다 이런 아쉬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연계나 공공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선제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을 좀 하겠다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그래서……

○소위원장 강훈식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부울경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은 기초하고 광역도 묶는 거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초광역권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 시도를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과정에서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원영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산·창원·진해 이쪽의 예보다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남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얻는 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공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라 이런 초광역권 개념으로 법제화시켜서 그 개념을 우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사실 지역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도를 해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념 정도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명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같이 또 신중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광역권 협력은 기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그 틀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협력의 방안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또 정부가 그 모델이 만들어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지자체 주도로 이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내지 틀을 만들어 드리는 사항이라 권명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권명호 위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강훈식 그런데 신중하자는 말씀이지요?

○권명호 위원 예, 신중하게 나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이것은 더 논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소위원장 강훈식 이런 개념 설명을 위원님한테 지금 여기서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위원님들을 다 만나고 설명이 됐으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만나 주세요. 개념 논의를 여기서 우리가 법안심사 때 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부족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더 열심히 하세요. 그 방법 밖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권명호 위원 저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8항부터 22항까지는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이성만 의원 및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심사자료 142쪽입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 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1986년 이후 계속 1000만 원으로 유지된 것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개정안은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명확지 않은데 법률에 그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연탄의 정의 신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복조문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부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최고판매가격 지정시기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최고판매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공단이 석탄산업법 제29조제9호의 사업을 시행한 후 위탁하는 근거가 없어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다음 154쪽입니다. 수

행하는 사업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로 변경이 돼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이 좀 이동이 됐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직접 찾아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법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 법에서 직접 개정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석탄광업자가 판매하는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만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석탄은 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판매하는 석탄의 안전성 여부, 열량 부족 등 품질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석탄광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개정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장부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이성만 의원님 발의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최고판매가격제도 근거, 제24조의2에서 연탄의 정의조항을 도입했는데요. 현재 석탄산업법 자체가 석탄 가공제품을 법률에 정의하고 그리고 연탄은 그 가공제품의 하나로서 시행령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석탄산업법 체계상 법률에 연탄을 별도로 정의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

고 봅니다. 나머지 안은 동의하고요.

다음 이철규 위원님……

○소위원장 강훈식 차관님,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부칙을 통해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님 개정안은 모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지금 위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딱 여기까지지요? 한 분 나가시면 안 되는데 방송이 있는 위원님이 계셔 갖고……

○이소영 위원 6시 10분까지 가면 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6시 10분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오늘 뒤에 남은 게 이거 빼고 2건이 더 있는데요. 하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하나는 전기안전법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좀 짧은 문제라 끝나는 시간을 6시 20분으로 정해 놓고 토론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산업부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소위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개정안하고 연결시켜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의견이 나오고. 그 건을 이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걸 검토를 하셨나요, 지난 소위 의견 나온 것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위원님, 죄송

합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제기됐던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145쪽에 나와 있어요.

○이철규 위원 수입탄 사용하는 연탄 제조업자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사실상 제가 뒤에 발의한 그것이에요. 뭔가 하면 수입탄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가지고……

○양의원영 위원 품질을 유지하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철규 위원 예, 그겁니다.

그거를 뒤에다가 돌려 갖고 해 놓은 겁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수입탄이라 하더라도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제재를 가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것은……

○이철규 위원 두 번째 것은 직접 규제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된 거예요.

○양의원영 위원 제 말은 산업부가 내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소위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요.

○양의원영 위원 아니, 소위에 참석을 못 하셔도 그전에……

○소위원장 강훈식 차관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모르고 오셨다면 업무 보고 안 받고 내용 모르고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와서 정부 입장을 대변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기영 담당 국장이 좀……

○소위원장 강훈식 국장님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탄을 연탄쿠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통상법상 문제가 돼서 이 관련된 내용은……

○양의원영 위원 그 건은 아까 이철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산업부가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저런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두 번째 건 제가 여쭙어봤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두

번째 건은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 말씀이신가요?

○양의원영 위원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연탄쿠폰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공장에 수입 석탄을 사용하여 연탄을 제조하는 공장 5개를 포함하는 것은 국내 석탄 재고량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소위원장 강훈식 145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수입탄을 사용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걸 규제하는 것은 통상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취지는 살리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품질검사로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건이 품질검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수입탄을 사용하는 연탄 제조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입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통해서 국내탄과……

○양의원영 위원 태양광에서도 KS 인증제도를 넣어서 수입 셀이나 수입 패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입하는 탄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그렇지요.

석탄공사나 국내 민영 탄광에서 제공하는 석탄의 품질을 똑같이 맞추도록 품질을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 가지고 검사하고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 거고 최소한 국내탄이 수입탄 대비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유범민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가지고 연탄을 좀 더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것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보일러를 친환경 가스보일러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는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 법 자체의

개정과는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저는 이 정도까지……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 인데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2항 황운하 의원의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 논의가 더 짧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은 시간만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심사자료 4권, 204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원격으로 주택·가로등의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격점검의 정의 및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5쪽, 상단 부분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원격점검의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원격점검 정의에 원격점검의 대상과 점검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6쪽, 대체토론 하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점검 결과 기술수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소

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안전공사의 점검이 없게 되고 원격점검의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5년간 99억 2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전기 관련된 기금에서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주택매매·임대 시 안전점검 도입과 그다음에 부칙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거용 시설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시행일과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주택매매나 임대 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면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의 서식에 첨부서류로 15년 이상된 주택의 경우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는 전기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거래 신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했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할 경우에 거래 신고가 아닌 등기 시점 또는 입주 시점에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 184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

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 주택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 도입과 관련한 국토부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등기 전 안전점검하는 부분도 법무부의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 도입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님.

○이철규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원격점검만 이번에 도입하고 이사하고 할 때 점검 의무는 이번에 도입하지 말자 이런 취지지요? 유보해야 한 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생각이 같아요.

시설물,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전기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예, 현재 전기 점검을 이제 원격점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가스·전기·소방 점검을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바뀔 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점검 근거만 넣고 나머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의 것은 동의하고요.

○양의원영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다들 비슷하신 거지요?

○양의원영 위원 예.

○소위원장 강훈식 그러면 더 추가 의견이 없으 시면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주 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6건의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2회 소위의 논의가 있었던 법안입니 다만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4권, 1쪽부터입니다.

이 법안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 위에 두 번 상정이 있었고 내용 보고가 있었습니 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깊이 들어가지 는 못했고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모두 다 설명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목 차 부분을 보시면 관련 법안에서 어떤 내용을 개 정하고자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소위 때까지는 고용진 의원안 법안 빼고 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고용진 의원안 법안 내용 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은 준대규모 점포 범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대규모 점포 경영자 가 개설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한 점포만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 다.

다음, 4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진 의원안에서 상권영향평가기 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을 하고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다음, 134쪽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가 통신판매업을 신 고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대상 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에서 유통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 는 단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 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전 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 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추가로 발의된 것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측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해 주시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고용진 의원안을 지금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 놔서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의원안 첫 번째 내용이 37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37쪽은 내용상으로는 동의인데요. 이거를 절차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안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다음, 47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 동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다음, 134쪽입니다.

두 번째, 고용진 의원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다음, 194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이 사항은 정부 측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마지막으로 199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진규 계획 수립, 여기에서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부분인데 단축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인데요. 오늘 이 법안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상 여기까지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좀 정리하면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3법은 다음주 중에 일정을 잡아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3법도 그다음 번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아까 위원님들하고 논의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강 훈 식	권 명 호	송 갑 석	신 정 훈
양 금 희	양이원영	이 소 영	이 장 섭
이 주 환	이 철 규	조 정 훈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변 재 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채 수 근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 1 차 관	박 진 규
제 2 차 관	박 기 영
통상교섭본부장	여 한 구
산 업 정 책 관	최 남 호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김 상 모
지역경제정책관	김 현 철
중견기업정책관	안 세 진
수소경제정책관	양 병 내
자원산업정책국장	유 법 민
무 역 정 책 관	박 재 영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안 성 일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 경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 희 권
과학기술정책국장	
행정안전부	서 상 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국 토 교 통 부	박 명 주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 광 우
관세정보세산업지원과장	